

누군가 마흔 살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서른아홉 살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김 지 성

- 창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2022년도 5급 공채(행정) 법무행정직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5급 공채 법무행정직렬에 합격한 김지성입니다. 수험생 신분을 벗어나게 되면서 여태 혼자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답을 내려 놓은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용해진 데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글로써 널리 알릴 기회를 주신 편집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남겨 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기에서는 제가 응시한 시험의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수험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 진입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진입을 막 결정하신 분들, 또는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I. 법무행정 직렬 소개

1. 시험 과목

법무행정직렬의 시험 과목은 2022년 기준 필수 네 과목(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한 과목으로, 총 다섯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상법이나 노동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호감에 기해 노동법을 선택했는데, 처음 2차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응시 인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인

원이 노동법을 선택한 데 반해 마지막 2차 시험 때는 저를 포함해 서너 명만 노동법을 선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법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노동법의 경우 노무사 시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 공부 난이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보다 흥미로운 과목을 선택하여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폐지되어 네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타 시험과의 병행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 다른 시험과의 병행을 염두에 두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목이 일부 중복되는 타 시험으로는 입법고시 법제직,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있습니다. 입법고시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헌법·형법 서술형을, 법원행정고등고시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헌법·민법·형법 객관식과 형법·형사소송법 서술형을 추가로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법원행정고등고시는 공부량이 부담되어서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입법고시는 올해 운 좋게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형법 공부를 하지 않아 합격과는 거리가 먼 점수를 받았으나, 5급 공채 시험을 한 달 반 앞두고 행정법·민법·민사소송법 총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5급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는 각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공무원을 뽑는 시험으로, 시험 응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의 꿈과 내일의 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병행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5급 공채만의 특이점

법 과목 서술형 시험을 보는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시험은 모두 하루에 두 과목 이상을 치는 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5급 공채 법무행정의 경우 선택 과목으로 경제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하루에 한 과목만 시험을 칩니다. 법 과목의 경우 특히 시험 하루 전에 전 범위를 훑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점이 있는 시험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험 일정에 일요일을 포함시켜 하루 쉬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민법 시험 범위의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 친족상속법이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가뜰이나 양이 많은 과목에서 마음 놓고 공부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심적 부담을 많이 줄여 주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담보물권 파트가 몇 년 간 단독 쟁점으로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사실 불안한 마음에 이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빼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빈출 파트만 공부하기에도 바쁜 초시 때에는 기출 경향을 고려하여 공부 범위를 적당히 맞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직렬 일반의 불리함도 존재합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5급 공채 전용 강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출제 유

형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학습 지도를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 단점일 수 있으나,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의 판단하에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도 실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를 조직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같은 직렬을 수소문해 봐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도는 아니고, 내가 스터디를 필요로 하는 만큼 반대편의 수요도 존재하니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원하는 스터디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타 시험 준비생들의 스터디에 잠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잠입을 꽤 많이 했었는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행시생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준비하는 시험별로 수험생들 성향이 달라 사람 만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접해 보겠나 싶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수험생활 중 활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차피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준비해 두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 진입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Ⅲ. 공부 방법

1. 공부 순서

법을 처음 접하는 경우, 민법 공부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먼저 법의 기본 정신이나 원리를 익히고, 그 후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절차법까지 지평을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순서를 따랐습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에는 민법과 내용적으로 겹치는 면이 거의 없어 막막하다고 느꼈으나, 행정법에 들어가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법문이나 판례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법이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강의 수강

저는 과목별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항상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의 장점은 내용 학습과 더불어 각 내용의 강약 조절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법리간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수험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지 상태의 수험생이라면 혼자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오랜 세월 법 공부를 해 온, 그리고 수년 간 기출 분석을 해 온 사람의 시선에서 책을 읽어 주는 것을 듣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의식적으로 기본 강의 외에는 강의 듣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사례 강의를 들으면 사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고, 심화 강의를 들으면 심층적인 학습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한 점들이 저에게는 양날의 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이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의를 들은 시간을 혼자 공부한 시간으로 쳐 거기에 안주하게 될 것 같았고,

수업을 들을 때야 이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착각하여 복습을 소홀히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시험 전날까지 강의에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언젠가는 당연히 독립을 해야 하므로 그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수험 생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공부 초반에 강사님들의 카페에 가입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 글을 남기고는 했습니다. 답은 대부분 기본서를 잘 읽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는 식으로 달렸는데, 실제로 해당 부분 기본서를 차분하게 정독해 보면 궁금증이 해결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 책 속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의문을 혼자 해결하는 버릇을 들인 것이 수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본서가 수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헛갈리는 개념이라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반드시 이해가 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추후 기억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예 길을 잘못 든 경우에, 예를 들어 법리 이해가 기초부터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라면 혼자서 책을 보는 것이 오류를 공고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기본 강의를 최대한 꼼꼼히 들으면서 부족함 없이 필기를 해 두시거나,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 자꾸만 찝찝함이 드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행정법만큼은 매년 3순환을 수강하였는데,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강의 순환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혼자 강의를 듣지 않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동 시간이나 집안일 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오디오를 주로 들었고, 들으면서 의문이 남거나 미흡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드시 책을 찾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3. 서브 노트

저는 인강 수강을 최소화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서브 노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브 노트가 있으면 회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수험서보다 나은 퀄리티의 서브 노트를 만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일 지라도 수험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전 해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꼼꼼히 읽지 않았던 부분이 다음 해에 다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반드시 누락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다만 시험 직전 회독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강약 표시나 목차 정리는 해 둘 필요성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브 노트 대신 기본서에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서브 노트를 만들지 않아 생길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목차나 중목차 옆에 답안 작성용 목차를 따로 적어 놓고 가끔씩 그것만 읽어 본 뒤 답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기

본서를 읽으면서 괄호()로 시험 전날이라면 이 부분을 읽을 시간에 다른 부분을 더 주의 해서 보겠다 싶은 부분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시험이 많이 남은 시점에는 괄호 안의 내용도 빠짐없이 읽어 공부에 구멍이 없도록 하 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나 시험 전날에는 괄호 안의 내용을 제외하고 읽으면서 회독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시험 막바지에는 스스로와 타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부가 부족했던 나머지 시험 직전 까지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법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 각론이 특히 문제되었는데, 아래는 올해 시험 직전에 만든 서브 노트의 일부입니다.

| |
|---|
| <p>직무이행명령</p> <p>1. 의의(제189조)</p> <p>2. 직무이행명령의 대상</p> <p>‘국가위임사무’란 기관위임사무를 말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의 통일적 실현 강제하려는 직무이행명령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p> <p>다만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분쟁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는바(165⑦), 이러한 경우에는 자치사무도 예외적으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된다(소백산면사건).</p> <p>3.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p> <p>(1) 내용(189⑥)</p> |
|---|

| |
|--|
| <p>(2) 소송의 성격</p> <p>직무이행명령과 같은 상이한 법주체에 속하는 기관 사이의 소송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이외에는 기관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p> |
|--|

| |
|--|
| <p>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p> <p>1. 경찰의 의의</p> <p>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행정청의 작용을 말한다.</p> <p>2. 경찰권 발동의 근거</p> <p>(1)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원칙</p> <p>경찰작용은 권력적이고 침해적인 수단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의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다.</p> <p>(2)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거부</p> <p>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일일이 개별적 수권조항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p> <p>(3)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존재 여부</p> <p>명시적인 判例는 없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에서 청원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거하여 무허가주택 단속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다.</p> |
|--|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답안지에 옮길 계획이었기 때문에, 분량과 표현도 답안 작성을 고려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오픈북으로 답안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반복하여 읽다 보니 진작 서브 노트에 대한 불신을 지우고 적절히 활용했다면 수험 생활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서브 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4. 공부 목표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전날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으면 합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도 ‘시험 전날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급 공채 시험은 하루에 한 과목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하루 전 해당 과목의 전 범위를 복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잘 아는 논점이든 그렇지 않은 논점이든 직전에 공부한 사람이 답안 작성에 가장 유리한 법 과목 특성상 평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논점을 찌르든 줄줄 나올 정도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시험 직전에 그러한 상태가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냥 속 읽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새롭게 외워야 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에 있어서는 평소 기본서를 꾸준히 읽으면서 법리에 대한 익숙함을 키우려 노력하

였고, 암기에 있어서는 언제나 모든 법리를 외우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태에 언제든 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때 두문자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목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암기 방법

| | | | |
|----|-----------------------|--------------------|----------------------|
| 1 | 노동관련법 제정일 | 노동관련법 의의 | 제안서의 행위조직 |
| | | 노동관련법 제정일 | 규정준수 여부가되임 |
| 3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 기분전세 결정유지 |
| | | 사용종속관계 구체적인 판단기준 | 내용상 사용 의의에 의해 계인 급제사 |
| | | 무주계 판단기준 | 급제사 사용종속의의 |
| | | 일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 법정사(내용주-외적사(내용주 |
| | | 종업외(종업외) 인정 | 외적사(내용주) 인정(종업외) |
| 4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 | 인사조직표 명목(사) 일련제 |
| | | 특히 근로계약관계 성립요건 | 독자성결 결정유지 결정유지 |
| 5 | 근로기준법 제20 조(근로계약의 체결) | 사회의 선문 의의 | 사용종속(사용종속) |
| | | 합의의 자유가 없는 경우 | 합의의 자유가 없는 경우 |
| 6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 원칙 | 동일 가치의 노동 | 동일가치(동일) |
| | | 동일 가치 노동인지 여부 | 근로계약 |
| 9 | 중간착취의 배제 | 취득 | 취득 |
| | | 취득의 개념 | 타인으로부터 |
| 10 | 취급청구권 인정 여부 | 인정 여부 | 재산(재산)취급권 인정(취급청구) |
| 11 | 경합규정(경합)의 효용성 | 경합규정(경합)의 효용성 | 경합규정(경합)의 효용성 |
| | | 경합 | 경합규정(경합)의 효용성 |
| 13 | 위약금(위약금) | 소정금액 반환 | 합의(합의)의 효용성 |
| | | 위약금 반환(위약금) | 합의(합의)의 효용성 |
| | | 위약금 반환(위약금) | 합의(합의)의 효용성 |
| | | 위약금 반환(위약금) | 합의(합의)의 효용성 |
| 14 | 사내일 보너스 | 법적 성격 및 배제 방법 | 사내일 보너스(사내일 보너스) |
| | | 사내일 보너스의 반환(위약금) | 사내일 보너스(사내일 보너스) |
| 15 | 배우내정 | 취급청구권의 인정(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16 | 기용 | 취급청구권의 인정(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본래용 기용의 인정(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17 | 임금상 판단기준 | 임금상 법적성질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임금상 판단기준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근로계약의 대가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취급청구(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취급청구(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취급청구(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18 | 경합규정(경합)의 인정(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취급청구(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취급청구(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 | 취급청구(취급청구) | 취급청구(취급청구) |
| 19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 |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 |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 |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동상규정(동상)의 취급(취급청구) |
| 22 | 임금(임금)의 취급(취급청구) | 임금(임금)의 취급(취급청구) | 임금(임금)의 취급(취급청구) |
| | | 임금(임금)의 취급(취급청구) | 임금(임금)의 취급(취급청구) |

제가 생각하는 두문자 활용의 장점은 정확하고 풍부한 법리를 압축하여 암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문장이 외워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판례를 통으로 외우자니 용량상·시간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거의 모든 의의나 판례의 두문자를 뒀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사진

을 찍은 것처럼 뇌리에 박히는 판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두분자로 외운 것 같습니다. 따 놓은 두문자는 표로 정리해 놓고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고 쟁점과 매치시켜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두문자만 떠오르고 그래서 이게 무슨 판례였는지 연결을 시키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회독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두문자 표는 자기 전, 답안 작성 전 한번씩 읽어 보면서 눈에 익혔습니다. 표를 읽다 보면 해당 범위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도 해서, 빠른 시간 내 넓은 범위를 복습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공부 시간

저는 흔히 말하는 순공 시간이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적은 시간일지언정 최대한 밀도 있게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능한 갖지 않고 끊임 없이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스터디 하나

가 끝나면 바로 다음 스터디를 준비할 수밖에 없도록 스터디 간 간격을 좁게 정해 두고, 일정에 쫓기는 기분으로 공부한 것이 좋은 효율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올해 시험 스터디 시간표인데, 앞뒤로 그날 범위의 예습·복습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보다는 분량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얼른 끝내고 책상을 벗어나겠다는 목적하에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IV. 답안작성 방법

서술형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내용을 빈틈없이 공부하는 것에 더해 그것을 논리적으로 현출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뛰는 답안지보다는 원칙에 충실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쟁점이 사안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밝히고, 관련 법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사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오전 8시 | | | | | | |
| 오전 9시 | 민원소 기출 오전 9시-11:30 | | | 민원소 기출 오전 9시-11:30 | | |
| 오전 10시 | | | | | | |
| 오전 11시 | | | | | | |
| 오전 12시 | | | | | | |
| 오후 1시 | | | | | | |
| 오후 2시 | 쟁법 3순 오후 2시-3:30 | 쟁법 3순 오후 2시-3:30 | 쟁법 3순 오후 2시-3:30 | 쟁법 3순 오후 2시-3:30 | 쟁법 3순 오후 2시-3:30 | 쟁법 3순 오후 2시-3:30 |
| 오후 3시 | | | | | | |
| 오후 4시 | | | | | | |
| 오후 5시 | 노동법 사례 오후 5시-6시 | 노동법 사례 오후 5시-6시 | 노동법 사례 오후 5시-6시 | 노동법 사례 오후 5시-6시 | 노동법 사례 오후 5시-6시 | 노동법 사례 오후 5시-6시 |
| 오후 6시 | | | | | | |
| 오후 7시 | | | | | | |
| 오후 8시 | | | | | | |
| 오후 9시 | 민법 사례, 오후 9시 | 민법 사례, 오후 9시 | 민법 사례, 오후 9시 | 민법 사례, 오후 9시 | 민법 사례, 오후 9시 | 민법 사례, 오후 9시 |
| 오후 10시 | 형법 판기, 오후 10시 | 형법 판기, 오후 10시 | 형법 판기, 오후 10시 | 형법 판기, 오후 10시 | 형법 판기, 오후 10시 | |
| 오후 11시 | | 쟁법 행정법 판지 오후 11시-오전 12시 | | | 쟁법 행정법 판지 오후 11시-오전 12시 | |

그래서 답은 무엇인지의 순서에 따라 최대한 간명하게 답안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시험이 아니라 사례 문제를 푸는 시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단순 법리 설시에 그치는 답안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답안지 분량과 배점을 고려했을 때 십 점당한 장을 쓰는 것이 정해진 룰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안지를 작성함에 있어 최대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시험장에서 사십 점짜리 문제를 겨우 두 장밖에 쓰지 못했던 때에도 점수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VI. 마치며

공부하는 동안 “누군가 마흔 살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서른아홉 살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의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진입을 빨리 한 편이 아니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학위를 따고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을 보며 무척 초조해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앞만 보며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힘이 들더라도, 분명 멀지 않은 곳에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의식적으로 많이 하시면서 너무 괴롭지 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게 될 날을 고대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